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통량 감소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등의 수시검토 근거  
명확화 〉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54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 목 차

|                                                           |   |
|-----------------------------------------------------------|---|
|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54호) .....                        | 1 |
| Ⅰ. 제안경위 .....                                             | 1 |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Ⅲ. 검토의견 .....                                             | 3 |
| 1. 교통량 감소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등의 수시검토 근거 명확화 (안 제21조의2 제2항) ..... | 3 |

##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2219054)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일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5. 22.
3. 회 부 일 : 2026. 5. 26.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하여 교통량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이하 “지정등”이라 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등을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대규모개발사업 등으로 교통량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 검토가 5년 주기를 원칙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교통환경 변화의 반영을 통해 노선 지정 해제가 시급하지만 타당성 검토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요건에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노선 지정이 필

요하지 않게 된 도로의 지정 해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 Ⅲ. 검토의견

#### 1. 교통량 감소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등의 수시검토 근거 명확화 (안 제21조의2 제2항)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감소, 교통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이하 “지정등”이라 함)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1조의2(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① (생략)                                                                                                        | 제21조의2(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u>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u> 에는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할 수 있다. | ② -----<br>-----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br>-----<br>-----<br>-----. |
| <신설>                                                                                                                                              | 1. <u>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u>                  |
| <신설>                                                                                                                                              | 2. <u>인구감소, 교통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u>                                 |

| 현행         | 개정안                                                                                                           |
|------------|---------------------------------------------------------------------------------------------------------------|
| ③ ~ ⑤ (생략) | <p><u>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b>부칙</b></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가. 검토의견

현행법 제21조의2<sup>1)</sup>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 간 연결성, 이동성, 교통량의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5년의 검토주기와 관계없이 타당성을 검토(수시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1) 「도로법」

제21조의2(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간 연결성, 이동성, 교통량의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제1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려면 도로 노선을 관할하는 행정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등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도로법 시행령」 제22조의2<sup>2)</sup>는 수시검토 사유를 대규모 주택건설·도시개발사업, 공장 설립, 관광지 조성, 교통시설 개발 등 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어, 인구감소 등으로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는 수시검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도로 이용자가 거의 없음에도 국도로 계속 지정됨에 따라 그 접도구역 등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sup>3)</sup>가 있어 교

## 2) 「도로법 시행령」

제22조의2(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결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 전체의 면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건설 및 도시개발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설립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지 조성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가목에 따른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나. 「온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의 개발사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의 개발 및 건설 사업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교통량에 현저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3) 국도48호선 시점 일부인 인천 강화군 양사면 867-2번지 0.64km 구간이 도로 이용자가 없음에

통량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도 수시검토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법률에 인구감소 등 교통량 감소의 대표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서, 교통량 감소가 수시검토 대상에 포함됨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유의 범위와 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위임의 구체성을 제고하는 의의가 있음.

또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실제 교통량 감소에 따라 기존 국도 노선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화된 교통여건을 적기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교통량 감소에 따른 수시검토는 기존 일반국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의 도로등급 하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는데, 교통량이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도로가 일반국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교통량이 감소하더라도 지역 간 연결성이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21조의2제1항<sup>4)</sup>도 정기적인 노선 지정등의

---

도 불구하고 국도로 지정되어 있어, 도로법에 따른 점도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가 제한되는 등 재산권 침해 민원 발생 등을 사유로 강화군에서 폐지 건의('25.9)

타당성 검토 시 교통량뿐만 아니라 지역 간 연결성·이동성 등 교통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둘째, 도로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실제 노선 변경·폐지 수요를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음.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로 인한 도로등급 하향 등에 따라 도로의 관리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 종전에 국가가 부담하던 도로의 유지·보수 및 관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그동안('01~'25년) 노선 지정등을 위한 지자체 수요조사 시 교통량 감소에 따른 일반국도 폐지 요구는 없었고, 이에 따라 현행 대통령령에서 교통량 증가 사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셋째, 현행법 제21조의2제2항은 '교통량이 현저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수시검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변화'에는 교통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에 인구감소 등 교통량 감소 사유를 추가하는 것만으

---

#### 4) 「도로법」

제21조의2(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간 연결성, 이동성, 교통량의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여야 한다.

로도 수시검토가 가능해진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나. 국토교통부 의견

도로법 제21조의2제2항은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교통량 증가 및 감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통량 감소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다만,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도로 노선 등급을 하향(국도 및 국지도→지방도 및 시·군도 등)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므로 도로의 유지관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령 개정에 따른 수요조사 및 도로 관리주체 변경(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
|--------------|
| 문 의 처        |
| 02)6788-5582 |

## 참고

## 도로사업 재원분담

※ 도로법 제10조~제18조

| 도로등급           | 도로관리청              | 재원 분담기준                                                                                                                                                                                                                                                         |
|----------------|--------------------|-----------------------------------------------------------------------------------------------------------------------------------------------------------------------------------------------------------------------------------------------------------------|
| <b>고속국도</b>    |                    |                                                                                                                                                                                                                                                                 |
| (재정)           | 국토부장관<br>(도공사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 : 국비 40%, 도공 60%('16년부터)</li> <li>건설 : 국비 40%, 도공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 용지비 국고 100%</li> </ul> </li> <li>유지관리 : 도공 100%</li> </ul>                    |
| (민자)           | 국토부장관<br>(민자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비, 공사비*, 유지관리비 : 민간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협약에 따라 일부 국비 지원 가능</li> </ul> </li> <li>용지비 : 국비 100%</li> </ul>                                                         |
| <b>일반국도</b>    |                    |                                                                                                                                                                                                                                                                 |
| (시외부)          | 국토부장관<br>(지방국토청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비, 용지비, 유지관리비 등 : 국비 100%</li> </ul>                                                                                                                                                                                   |
| (시내부)          | 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비, 용지비, 유지관리비 등 : 지방비 100%</li> </ul>                                                                                                                                                                                  |
| (국도대체<br>우회도로) | 국토부장관<br>(지방국토청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비, 공사비 : 국비 100%</li> <li>용지비 : 畵面지역 국비, 洞지역 지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洞지역 보상비가 洞지역 건설비용의 30%를 초과하면, 초과비용 일부를 국고 지원 가능</li> </ul> </li> <li>유지관리비 : 국비 100%</li> </ul> |
| <b>지방도</b>     |                    |                                                                                                                                                                                                                                                                 |
| (지방도)          | 도지사<br>(시 구역 : 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비, 용지비, 유지관리비 등 : 지방비 100%</li> </ul>                                                                                                                                                                                  |
| (국가지원<br>지방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비 : 국비 100%(지방청 시행)</li> <li>공사비 : 국비 70%(지자체 시행)</li> <li>용지비 : 지방비 100%</li> <li>유지관리 : 지방비 100%</li> </ul>                                                                                                          |
| 특별·광역시도        | 특별·광역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비, 용지비, 유지관리비 등 : 지방비 100%</li> </ul>                                                                                                                                                                                  |
| 시·군·구도         | 시장, 군수, 구청장        |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소관

| 구분                                                                       | 재원 분담기준                                                                                                                                                                                                                                                                          | 주체                       |
|--------------------------------------------------------------------------|----------------------------------------------------------------------------------------------------------------------------------------------------------------------------------------------------------------------------------------------------------------------------------|--------------------------|
| <b>혼잡도로</b><br>* 광역시 洞지역<br>도로(고속도로, 국도 제외)<br>중 교통혼잡 개선이<br>필요한 도로(도로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비* : 국고 50%, 지방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계획('16-'20)까지 국고 100%, 제4차 계획('21-'25)부터 국고 50%</li> </ul> </li> <li>공사비 : 국비 50%, 지방비 50%</li> <li>용지비 : 지방비 100%</li> <li>유지관리비 : 지방비 100%</li> </ul> | 지자체<br>(설계, 건설,<br>유지관리) |
| <b>광역도로</b><br>* 2개 이상 시·도에 걸친<br>도로(대도시권광역교통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사업비* : 국비 50%, 지방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건설·용지비 전체 포함</li> </ul> </li> <li>유지관리비 : 지방비 100%</li> </ul>                                                                                           | 지자체<br>(설계, 건설,<br>유지관리) |